



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
경제민주화 · 창조경제 구현

2015 1 13 ()

가

: (044- 200- 4300)

: (044- 200- 4302)

가

☐ _____ , _____ .

‘ _____ ’

* 2015 1 13 .

* 당초 김재경, 한명숙, 김기준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, 이를 기초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.

1.

가. (64 3)

 $\angle$ $\cdot$ $\triangleright$

☐ 가 ,

< >

* 유사입법례: 공익신고자 보호법(제29조), 공직선거법(제262조의 3) 등

< >

, , ,

. . (55 4 3 4)

< . >

□ 가
, 가 .

< >

□ 가 (:
) .

* 유사입법례: 국세징수법(제20조) 등

. (8 2 11 2)

< . >

□ ‘ , ‘ ’로
.

< >

□ 8 2() 3 , 11 2
() 5 .

* 증권거래법→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.

□

가

○

,

.

가

.

.

□

.

<

>:

30

가

. . .

가

.

 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www.fcgo.kr



행복한
대한민국을 세우는
정부 3.0
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

<첨부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 ①·② (생략)	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③----- ----- -----.
1.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(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”이라 한다)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「증권거	다. ----- ----- 「자본시

「상법」 제191조의7(우리사
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
정)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
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
당해 손자회사가 「상법」
제513조(전환사채의 발행)
또는 제516조의2(신주인수
권부사채의 발행)의 규정
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
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
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
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
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
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
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
우

라. ~ 바. (생략)

2. 3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第11條의2(大規模内部去來의 理
事會 議決 및 公示) ① ~ ④
(생략)

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
「상법」 제393조의2(이사회내
위원회)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
[「증권거래법」 제2조(정의)제
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

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
률」 제165조의7-----

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第11條의2(大規模内部去來의 理
事會 議決 및 公示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-----

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
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--

포함되고,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]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第55條의4(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) ①・② (생략)

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 決定을 取消하고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<신설>

-----한한다)

第55條의4(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4조의3(포상금의 환수 등) ①
공정거래위원회는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

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, 허위신고, 거짓진술,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

2.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

3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